

제305회 정례회
2011. 12. 19(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
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1년 12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12월 12일

3. 제안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 충청북도 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대행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도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자율경쟁유도 및 독점운영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러 차례 조례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관리 등의 합리적 개선으로 도민 부담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구 분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	최고가 비율(%)	
				평균대비	최저대비
대 형	28,583	13,000 청주	35,000 영동·증평·괴산	122%	269%
중 형	23,583	12,000 청주	30,000 증평	127%	250%
소 형 (이륜차)	7,583	3,000 청원	13,000 증평	171%	433%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사무집행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사전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에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 업무관련부서인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충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2011.11.10 ~ 11.29)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선택하였으며,
- 조문의 표현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게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지정방법을 시·군별로 둘 이상의 발급대행자를 지정토록 하여 독점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당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의 발급대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대행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선정기준에 적합 시 연장가능하도록 하며,
- 대행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

판 발급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격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